

인천 인현상가(라이브Ⅱ 호프) 화재

1. 일반사항

- 소재지 : 인천 중구 인현동 2741
- 발화일시 : 1999. 10. 30. 18:57
- 발화장소 : 지하1층 노래방의 내부 공사작업장
- 인명피해 : 사망 56명, 부상 77명
- 재산피해 : 동산 64,813천원, 부동산 43,125천원
- 발화원인 : 지하층 노래방 공사현장 아르바이트생의 불장난으로 추정

2. 건물상황

본 건물은 1985년에 준공된 연면적 856.42m²로서 동인천역 앞 유흥가에 위치한 상가건물임.

가. 건물현황

총 별	용 도	면적(m ²)
지하	노래방	164.8
1	음식점	184.12
2	호프집	184.12
3	당구장	184.12
4	주택	139.38

지하층에는 비상계단을 포함 2개소, 지상층은 직통계단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사고 발생 직전의 상황은 지하층 노래방은 내부수리작업 중이었으며, 사고 당일 가을축제를 마친 인천 시내 고교학생들이 뒤풀이를 하기 위해 대거 이곳을 찾았기 때문에 당시 2층 호프집에는 인천 시내 중·고교생 150여명이 있었음.

1층 음식점에는 20여명이 식사 중이었고 3층 당구장에는 주인 1명과 손님 2명이 당구를 치고 있었음.

3. 화재현황

화재는 10월 25일부터 내부수리중인 상가건물 지하 노래방 공사현장에서 화재발생 당일(10월 30일) 뒤처리 청소를 하던 아르바이트생 임모균과 김모균이 청소를 하다 시너와 석유 중 어느 것이 불이 더 잘 불을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군이 시너를 바닥에 뿌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건조를 수 없이 커져 화염이 지하실 전체에 번졌다. 지하 1층에서 치솟은 불기둥과 유독가스는 계단과 건물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통해 2층 쪽으로 순식간에 번졌다.

1백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가건물 2층 호프집

내부는 완전 전소되지 않고 출입구쪽을 중심으로 불에 그을린 상태로 연기만 자욱해 사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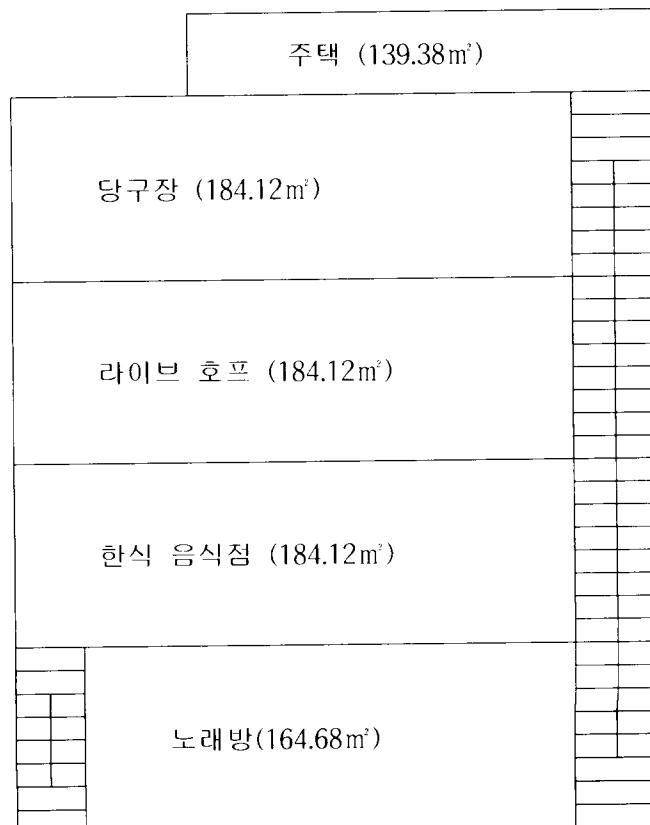
사상자들은 출입구 반대쪽 주방에서 50여명이, 내부에 설치된 20개 가량의 테이블 사이 3개 통로에 20여명씩 무더기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바닥에는 운동화와 가방, 깨진 맥주잔, 휴대폰 등이 널려 있어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줬다.

호프집에서 구조된 인천 D고 1년 인모(16)군은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전기가 나가 실내는 암흑천지로 변했고, 곧이어 유독가스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바닥에 엎드린 채 옷으로 코를 막았는데 그만 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층 당구장에 있던 손님과 연기를 피해 서 3층으로 올라온 17명은 유리창문을 통해 밑으로 뛰어 내려 중경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고, 4층 가정집에는 당시 사람이 없어 변을 면했다.

화재진압을 지휘한 인천 중부소방서 김명환(金明煥, 57) 서장은 “연기를 헤치고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녀 고교생으로 보이는 10대들이 통로에 3~4겹으로 포개진 채 숨지거나 신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림1】 건물현황

4. 진화상황

이날 16:57분께 화재신고를 받고 10분여만에 소방차 40여대와 소방대원 1백여명이 출동, 불은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대원들은 가로 10m, 세로 3m 가량의 2층 호프집 통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여 우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시킨 후 밖으로 옮기는 등 125명을 끌어냈다.

5. 피해상황

재산피해는 1억8천만원으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음. 인명피해는 사망 56명, 부상 8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6. 문제점 및 대책

50여평 규모의 호프집은 이날 1백20여명이 북적댄 데다 내부 구조는 탁자와 의자들로 빽빽이 차있어 통로 공간이 겨우 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비좁게 만들어졌다.

호프집은 무허가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대형 참사를 빚어 경찰관과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 중구청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10대 중·고교생들이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가 붙어 있는 유홍업소를 아무 거리낌없이 드나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하층 노래방 계단에 설치된 우레탄 내장재는

이번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건축법상 노래방용 도의 실내 또는 계단에는 불연성 내장재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낮은 설치비 등을 이유로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었음.

특히 피해가 가장 큰 2층 호프집은 전면 유리 창문을 나무패널로 막아 2층 희생자들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음.

화재가 난 건물주가 삼성화재에 2억원짜리 화재보험을 들었지만 건물 1억2천만원, 집기·시설 8천만원만 보상토록 돼 있으며 상가 영업주들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험사에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임.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 대상을 완화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소규모 업소 및 건물에도 적용을 한다면 많은 희생자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은 지급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 정보센터 과장 김인태